## ■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1의3] <개정 2008.2.22>

##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(제168조의10제3항관련)

## 1. 가축별 기준면적

구 분	사 업	가 축	축사 및 부대시설		초지 또는 사료포		
			축사	부대시설	초지	사료포	비고
		두 수	(제곱미터)	(제곱미터)	(헥타르)	(헥타르)	
1. 한우	사육사업	1두당	7.5	5	0.5	0.25	말·노새 또는
(육우)							당나귀를 사
							육하는 경우
							를 포함한다.
2. 한우	비육사업	1두당	7.5	5	0.2	0.1	
(육우)							
3. 유우	목장사업	1두당	11	7	0.5	0.25	
4. 양	목장사업	10두당	8	3	0.5	0.25	
5. 사슴	목장사업	10두당	66	16	0.5	0.25	
6. 토끼	사육사업	100두당	33	7	0.2	0.1	친칠라를 사
							육하는 경우
							를 포함한다.
7. 돼지	양돈사업	5두당	50	13	_	-	개를 사육하
							는 경우를 포
							함한다.
8. 가금	양계사업	100수당	33	16	_	_	
9. 밍크	사육사업	5수당	7	7	_	_	여우를 사육
							하는 경우를
							포함한다.

## 2. 가축두수

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.

- 가.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(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
- 나.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 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
- 다.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